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시·도 및 같은 시·도에 속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선거나 장의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도록 하되, 자치구·시·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같은 시·도에 속하는 다른 자치구·시·군의 의회의원선거 또는 다른 자치구·시·군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제외함(안 제 53조).
- 하나의 구·시·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·시·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,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1조, 제61조의2).

II. 검토의견

1. 불필요한 단서 부분 등 삭제(안 제53조제2항제4호 단서, 같은 조 제3항 괄호)

- 지방의회의원 또는 장은 해당 시·도 및 같은 시·도에 속하는 자치구·시·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으로 입후보하는 경우 현행법 제53조제2항제4호에 따를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직을 그만두어야

하나, 안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게 됨.

이에 안 제53조제2항제4호 단서에서는 안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여, 선거일 전 30일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임.

그러나, 현행법 제53조제2항은 “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”라고 명시하여 제53조제1항의 본문에 적용됨을 전제로 그에 대한 예외를 각 호 사유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, 안 제53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어 이미 ‘제1항 본문’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안 제53조제2항제4호에서 다시 이를 제외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함.

- 또한 안 제53조제3항의 괄호 부분에서는 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 의원이 같은 시·도에 속하는 다른 자치구·시·군의 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를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경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.

현행법 제53조제3항의 경우도 “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”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53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, 안 제53조제3항의 괄호는 이미 안 제53조제1항 단서 괄호에 의하여 ‘제1항의 단서’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함.

- 따라서, 안 제53조제1항과 내용이 중복되고 법 체계상 적합하지 않은
안 제53조제2항제4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괄호 부분을 삭제하는
수정의견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함.

현행	개정안
제53조(공무원 등의 입후보) ① (생략)	제53조(공무원 등의 입후보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<단서 신설>	4. ----- ----- -----. ~~/ 다만,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·도 관할구역 내에서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~~
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시·도관할구역에서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시·도 및 자치구·시·군 ^{같은 시·도에 속하는} 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, ~~(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이 같은 시·도에 속하는 다른 자치구·시·군의 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는~~

④ . ⑤ (생략)	~~제외한다)~~ ----- -----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④ . ⑤ (현행과 같음)

2. 기타 사항

-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체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최 기 도)